

「구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5개 장으로 구분
-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및 띄어쓰기 정비
- 대행 사업을 종료한 후 지체없이 비용을 정산(안 제6조제3항)
- 경영실적 평가 등이 완료된 후 의회 제출(안 제15조)
- 출자·출연금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,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21조제3항, 「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」 제16조제3항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현행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동의안의 형식체계 등을 명문화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문을 사항별, 내용별로 조합하여 5개의 장으로 구분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으로써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음.
- 특히, 제15조 ‘경영실적 평가 보고 등’ 과 제16조 ‘출자·출연에 대한 동의’ 항을 신설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추진 시 정산 및 보고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